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IPTV 이용약관 신고(승인)·변경신고(승인)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IPTV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해당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용약관(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자료의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으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요금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5조제2항의 요건과 법 제15조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이용자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광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개선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 항목, 평가일정 등 중요한 사항을 미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품질평가의 방법·절차, 자료제공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해당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용약관(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자료의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u>

현행	개정안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으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요금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5조제2항의 요건과 법 제15조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 멀티미

현행	개정안
	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이용자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광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

현행	개정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개선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 항목, 평가일정 등 중요한 사항을 미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현행	개정안						
	는 제5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품질평가의 방법·절차, 자료제공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IPTV법 시행령 별표 6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r><td>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u>이용약관의 신고</u>를 하지 아니하거나 <u>이용요금 승인</u>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td><td>법 제28조제1항제2호</td><td>1천만원</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u>이용약관의 신고</u> 를 하지 아니하거나 <u>이용요금 승인</u> 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2호	1천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u>이용약관의 신고</u> 를 하지 아니하거나 <u>이용요금 승인</u> 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2호	1천만원					
□ IPTV법 시행령 별표 6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r><td>2.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u>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u> 하지 아니하거나 <u>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u>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u>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u>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td><td>법 제28조제1항제2호</td><td>500</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u>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u> 하지 아니하거나 <u>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u> 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u>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u>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u>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u> 하지 아니하거나 <u>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u> 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u>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u>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	500					

현행			개정안		
			업을 한 경우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1,000
<신설>			5.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의2호	300